#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29

발의연월일: 2024. 7. 1.

발 의 자:김예지·최수진·안상훈

백종헌 • 장동혁 • 김선교

주호영 • 이인선 • 송석준

김도읍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 대두되고 있음.

하지만, 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의 참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있음.

이에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이 시체 해부의 참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9조 의10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10(시체 해부의 참관) ① 시체 해부를 참관하려는 사람은 학술이유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참관 신청을 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·방법과 참관 인원·기준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9조의10(시체 해부의 참관) ①
	시체 해부를 참관하려는 사람
	은 학술이유 등 정당한 이유를
	명시하여 시체 해부를 실시하
	는 의과대학의 장에게 신청하
	여야 한다.
	② 제1항에 따라 참관 신청을
	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기관위
	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관 여부
	를 결정하여야 한다.
	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ㆍ
	<u>방법과 참관 인원·기준·방법</u>
	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
	부령으로 정한다.